



롤스토이는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죽음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을 꺼리는 문화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이전에
삶을 정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큰 불행일 것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회복 불가능한 환자가 원치 않으면 임종기 연명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의도하는 바대로 죽음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죽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관련 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 홈페이지 www.LST.go.kr ● 문의전화 1855-0075

연명의료
결정제도

환자 및 환자가족의 결정



보건복지부



국가생명윤리정책은



연명의료결정제도

당신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Q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제도입니다. (2018.02.04 시행)

Q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의 성인은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자신의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
- 의향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400여개 등록기관을 통하여 1:1 상담 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지참 필수

Q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할 수 있으며, 이미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라 할지라도 작성자는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①단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누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
- 어디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있는 의료기관
- 무엇을?** 해당 환자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받더라도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②단계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 누가?** 담당의사 또는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
- 어떻게?** 해당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③단계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해당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유보), 중단합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환자 또는 환자가족의 결정 확인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환자가 미리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는 경우,

- ①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다면, 담당의사와 환자가 함께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 ②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다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의향서 등록을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연명의료계획서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경우,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가족 2인 이상 진술

환자가 작성한 서식도, 의사능력도 없는 경우라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사를 동일하게 진술하고, 이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

환자가족 전원 합의

앞선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다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합니다.

*환자가족 범위

- ①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존비속
- ②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①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 ③ 형제자매(①+②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